

■ 아동복지법 시행령 [별표 7의2] <신설 2022. 6. 21.>

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(제38조의2 관련)

1. 사무실

자립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 것

2. 상담실

가. 16.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
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 것

나.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,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 것

3. 그 밖의 시설

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6.5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 것